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제2011 - 64 - 230호(사건번호 : 201103조사016)

안 건 명 (주)비엠비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주)비엠비

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18-6  
대표이사 이홍래

의결연월일 2011. 11. 23.

### 주 문

1. 피심인은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. 단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3.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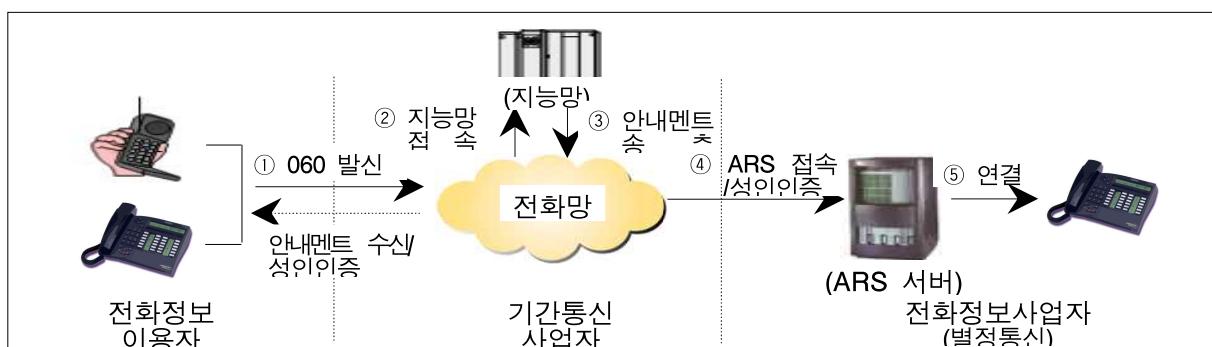
#### 다. 전화정보서비스 개념

- o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(060회선)을 임차하여
  - 음성채팅, 증권정보, 스포츠정보, 경마정보,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.

**< 기간통신사업자별 060 식별번호 >**

LG U+	KT	SKB	온세텔레콤	SK텔링크	비고
60Y	70Y	80Y	90Y	300	Y : 0~9의 숫자

- o 서비스 이용방법은 전화정보이용자가 유·무선전화로 060 번호에 전화하면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 및 지능망을 거쳐
  - 전화정보사업자의 ARS 장비로 접속된 이후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 인증(주민번호 입력)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.



※ 정보이용 안내사업자 변경('11. 3월) : 전화정보사업자→기간통신사업자

- 한편, 전화정보이용시 이용자에게는 부과되는 이용요금(정보이용료 및 통화료)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되며
  - 전화정보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%를 회수대행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.

#### 나.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일반현황

-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'10년도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은 156백만원 이다.(서비스개시일 '10. 6. 1)

<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0년	2011. 1월	2월	3월	4월	5월
매 출 액	156	29	44	49	80	99

※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- 피심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'회수대행 계약'을 체결하고
  - SK브로드밴드로부터 총 115개의 060 번호를 음성채팅 용도로 부여 받았고, 30초 당 2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.

<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제공현황 >

관련 기간통신사	서비스개시일	060 번호수	비 고
SK브로드밴드	2010. 6. 1	115개	음성채팅

#### 나. 피심인의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하여

- 피심인은 060번호를 부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체결한 회수대행 계약(이하 '전화정보서비스 계약')은 SK브로드밴드의 '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'을 그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. (전화정보서비스 계약 제2조)

※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 제2조(정보제공내역 및 회수대행 수수료) ① 전화정보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“전화정보서비스이용약관”에 따른다.

- SK브로드밴드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은 ‘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정보의 서두부분에 정보이용료(단위시간 및 요금), 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, 제공 정보명 등의 정보 이용안내를 해야 한다’고 정하고 있다.(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5조 제3항)
  - 피신인은 ‘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’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제한을 위해 성인인증을 하고 있다.
- 또한, 정보의 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에 필요한 일정시간은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(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14조 제5항)
  - 정보이용료가 공제되는 시간(이하, ‘공제초’)은 최소 40초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 
(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3조의 위임에 따른 ‘전화정보번호부여및번호관리지침’ 제15조)

※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제5조(서비스 제공) ③ 정보제공자는 060서비스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

1. 정보제공자
  2. 정보제공명 (또는 정보제공 형태)
  3. 정보이용료 (과금단위 및 요금), 4. 이용중단 안내
  5. 문의전화 번호
  6. 과금 개시음(“삐”)
  7.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(미성년자 이용제한 등의 특수한 안내 사항)
- ⑤ 정보의 특수성으로 이용안내에 장시간(1분이상)이 소요되는 경우, 별도의 이용 방법을 무료로 안내하여야 한다

※ 전화정보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번호관리지침 제15조(실시간서비스 이용자 보호)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정보이용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실시간 상담형서비스의 경우 통신회사 과금 개시 등록은 40초 이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- 아울러, 피심인의 '060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' 제6조에 서비스 이용 시 초기 안내문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원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

※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6조(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)

1. 이용계약은 이용회원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이용 약관을 고지한 후 이용회원이 동의 하였을 경우, 전화 접속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기안내문을 청취 후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- 동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명칭, 요금, 주민 번호 확인, 이용자번호 등을 인식시키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(피심인의 이용약관 제9조)

※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9조(이용신청의 승낙) 2.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이용회원에게 인식시키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가. 제공 서비스의 명칭
- 나.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
- 다. 이용회원의 불만 처리를 위한 방법
- 라. 이용회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
- 마.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의 확인

## 2. 사실조사 결과

### 가.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

- 방통위에서 '11.2.15.~3.14. 기간 동안 방통위 CS센터 민원, 광고문자 등을 통해 확인된 성인대상 060 번호 710개에 대해 1,402회 정보 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전화녹취하면서 모니터링한 결과,

  - 총 35개 전화정보사업자의 677개 번호가 1,029회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,

#### <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모니터링 결과 >

모니터링 내역		모니터링 결과(미실시)			비 고
060 번호수	횟수	안내, 성인인증	성인인증	계	
710개	1,402회	520회	509회	1,029회	미실시 업체 : 35개

- 이중, 20회 이상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15개 정보제공사업자를 사실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
- o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115개 060 번호 가운데 18개 번호에서 23회 성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았다.

< 피심인의 060 번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>

관련 기간통신사	모니터링 번호수	모니터링 결과(미실시)		
		안내, 성인인증	성인인증	계
SK브로드밴드	18개	-	23회	23회

#### 나. 현장조사 결과

- o 방송통신위원회에서 '11. 5. 23~7. 8일 기간동안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'10. 1월~'11. 3월 기간중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실시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.
- o 방통위 모니터링 기간동안 ('11.2.15.~3.14.) 성인인증을 미실시한 피심인의 18개 060번호에 대한 당시 전산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고, 피심인은 '모니터링으로 이용한 이동전화번호가 회원으로 등록'되어 성인인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- o 피심인은 최초 성인인증을 거쳐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3,650명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'회원'으로 관리하면서

- 이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.

< 성인인증 없이 정보를 제공한 횟수 >

구 분	1~20회	21~50회	51~100회	101~200회	201~500회	501~1,000회
회원수	1,830명	1,160명	380명	230명	40명	10명

※ 자료 출처 : 피심인의 제출자료(기간 : '10. 1 ~ '11. 5월)

### 3. 위법성 판단

#### 가. 관련 규정

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는 ‘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’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.

< 관련 법규 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금지 행위”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~4. 생략
  - 5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)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
#### 나. 금지행위 위반 여부

-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 동의 없이 ‘회원’으로 관리하면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피심인의 업무처리절차는

- 성인 명의의 전화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수단이 없어져 해당 전화 명의인에게 불측의 요금을 부과시키고, 미성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성인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
- 해당 이용자에게 광고성 스팸발송 등 이용자의 통신이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.

#### 4. 피심인 주장

- o 매번 성인인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과 효율성 제공을 위한 선의의 조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
- 방통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# 5. 시정조치 명령

##### 가. 금지행위의 중지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,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##### 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,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. 단,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## **다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**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,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**7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**

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.

## **8. 결 론**

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52조,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1. 11. 23.

방송통신위원회

## 위 원 장

최 시 중 (인)

부위원장

홍성규 (인)

위 원

김충식 (인)

위 원

## 신용섭 (인)

## 위 원

# 양문석 (인)